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9년 10월 8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1일

3.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용어 및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시 경미한 변경 범위 신설

(안 제6조의2)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폐율·용적률·건축제한 등 완화를 위해

기부채납할 수 있는 대상시설 신설(안 제7조)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의 종류 신설

(안 제7조의3)

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어 수정

- ‘기반시설’→‘공공시설등’, ‘미관지구’(삭제), ‘보존지구’→‘보호지구’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의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용적률 또는 건축물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시설의 기능발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시설 면적(30퍼센트 이내), 건축물 용적률(10퍼센트 이내), 건축물 높이(20퍼센트 이내)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대상으로 선정되는 시설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이외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선정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설된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의3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은 도에서 입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시설인 철도, 항만, 공항, 공원(묘지공원), 유원지, 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저수지(댐에 한정)에 한정하여 대부분의 기반시설은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짐.
- 입법예고('19. 9. 6.~'19. 9. 26.)를 통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기타 조문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